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  
 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  
 제 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
 안내

---

1. 관련근거 : 대통령령 제27296호(2016.6.30.), 보건복지부령 제408호(2016.6.30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령을 공표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□ 주요 개정 사항

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
  -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(만70세→만65세)
  - 결핵 상병에 대한 산정특례 구분 변경
  - 제왕절개분만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인하(20%→5%)
  - 분만취약지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금액 확대
-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  -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(만70세→만65세)

붙임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부.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  
 전국병원장

---

사원 김영진 팀장 노환우 국장 류항수

시 행 : 보험 제 2016-350 ( 2016.06.30 )

우편번호 04165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

전화 02-705-9258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[yjkim@kha.or.kr](mailto:yjkim@kha.or.kr)